

## 「론약관」 신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7조 (초회납입 및 지연배상금)</p> <p>⑤ 지연배상금률은 법정최고금리 (24%)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</p>	<p>제7조 (초회납입 및 지연배상금)</p> <p>⑤ 지연배상금률은 법정최고금리 (20%)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</p>	<p>대부업법 개정(법정최 고금리 20%로 인하)에 따른 변경</p>